

의안번호	2218237
의 퇴 인	백혜련 의원
회 답 일	2026. 6. 15.
추계번호	26A2032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2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)	○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(이하 “에너지복지 사업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음(제1항) - 3.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 환경의 개선	재량규정
2	안 제16조의3(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)	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2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)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2	안 제16조의3(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)	

2. 상세 사유

가.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(안 제16조의2)

- 안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복지 사업에 “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 환경의 개선”이 포함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(법 제16조의2제1항 각호)
 - 1.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(이하 “에너지이용 소외계층”

이라 한다)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

- 2. 냉방·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
- 3.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

□ 개정안에 따라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가능하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수행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현행 「에너지법」에 근거한 에너지복지 관련 주요 재정사업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에너지이용권,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등이 있음
 -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외의 에너지 지원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생계급여(광열비), 긴급복지(연료비),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거급여(주택개보수), 산업통상부 소관의 도시가스공급 배관사업(융자) 등이 있음

[표 1] 에너지복지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

소관	지원사업	2026년 예산
기후에너지환경부	에너지이용권	5,171.7억원
	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	1,085.8억원
	취약계층 에너지복지	165.7억원
	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	100억원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나.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(안 제16조의3)

□ 안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위해 직권으로 신청하는 대상자 수를 추정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

못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에너지이용권 미사용 사유 조사와 사용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(“사각지대 해소”)을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(2026년 예산 33억 1,100만원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